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 8. 22.)

상정, 의결(원안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

여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그 용어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 등의 변경은 수반하지 아니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의원)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조사 결과의 보고 등)”을 “(조사 결과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u>조사 결과의 보고 등</u>) 제 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 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u>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u>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u>조사 결과의 통보 등</u>) -- ----- ----- ----- ----- ----- ----- ----- ----- <u>통보하여야 하며,</u> <u>통보를 받은</u> ----- ----- ----- <u>통보</u> <u>하여야 한다.</u> ----- -----.